

EU의 對이란 제재조치 주요 내용

(2012. 2. 14)

I. 제재조치의 채택 및 시행

- EU는 지난 1. 23자로 對이란 제재조치를 규정한 이사회 결정 (2012/35/CFSP)을 채택하고, 채택일부터 즉시 발효하였음.
- 이번 제재조치는 EU 이사회에서 세부 시행규정이 추가로 채택되고, 이를 반영한 EU 회원국들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

II.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

1 이란産 원유, 석유,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금수

- 이란産 원유, 석유,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, 구매 및 운송 금지
 - 이와 관련한 자금 조달이나 재정적 지원(원유나 석유의 경우 금융 파생상품 포함), (재)보험도 금지되며, 새로운 금수 조치에 해당하는 상품 리스트는 세부 시행규정으로 결정될 예정
- 다만, 이번 제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 인정
 - 이란産 원유와 석유제품 관련하여 2012년 1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건 또는 보조계약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까지 이행 가능
 - 이같은 계약건으로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은 관련제품의 공급이 對EU 미지급액에 대한 배상이고 계약서상에 배상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
 - 이란産 석유화학제품과 관련해서도 위와 동일한 예외가 인정되나 그 이행 가능기간은 금년 5월 1일까지로 제한

- 이란産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조치는 EU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위해 금년 5월 1일 재검토될 예정

②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금융·투자 제재

- 2010년 제재조치에 포함된 석유 및 가스 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투자에 대한 제재 외에도 이란 국내 또는 해외의 이란인 소유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, 인수 또는 지분 참여 및 조인트 벤처 설립을 금지
 - 다만, 2012년 1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건 실행은 허용

③ 석유화학산업 관련 주요 장비·기술 제공 제재

- 이란 국내 또는 해외의 이란인 소유 석유화학 기업에 대하여 석유 화학산업의 주요 장비와 기술의 판매나 공급을 금지하며, 기술 지원, 연수·서비스 및 자금조달도 금지
 - 석유화학산업의 “주요 장비 및 기술” 리스트는 추후 세부 시행 규정을 통해 발표될 예정

④ 자산동결 리스트 확대

- 이란 중앙은행과 Tejarat 은행을 비롯한 9개 기관 및 3개의 자연인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경제적 자원의 운용에 제재조치를 취함(붙임자료 참조)
- 다만, 이번 제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 인정
 - 2012년 1월 23일 이후 이란 중앙은행으로의 또는 이란 중앙은행을 통한 자금이체로서, 동 이체가 특정 무역계약을 위해 비지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지불에 관련된 것이며 목록에 명시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- EU 금융기관에 무역 관련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이란 중앙은행에 의하거나 이란 중앙은행을 통한 동결자산의 이체로서 회원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
- Tejarat 은행과 관련, 특정 무역 계약과 관련있는 지급이며, 관련 회원국이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이 수령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(2012년 1월 23일 이후의 지급 또는 수령이 두 달간 가능)
- 외교관이나 영사업무 또는 국제조직으로 면책특권이 있는 계좌로부터의 이동은 공적인 업무를 위한 지급일 경우에 한하여 자산 동결이나 경제적 자원의 운용 제재에서 제외
- 리스트에 오른 기관에 대한 자금운용 금지 조치는 2012년 1월 23일 이전 체결된 이란産 원유, 석유, 화학제품과 관련 계약에 대한 이란 중앙은행으로의 지급건에는 해당하지 않음
- 생필품, 합당한 보수 지급, 법률서비스 관련 비용 배상, 동결된 계좌에 대한 이자, 리스트에 오른 기관이 리스트에 등재되기 전 실행한 지급건 등에 대한 자산 및 경제적 자금운용의 예외조치는 그대로 유지

⑤ 금,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거래 제재

- 이란 정부나 관련기관, 이란 중앙은행(또는 이를 대변해 행동하는 기관이나 조직, 또는 이들 소유의 기관)과의 금,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관련 모든 직·간접적 판매, 구매, 운송 및 중개 금지
- 동 금지조치에 해당하는 정확한 품목리스트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시행규정으로 결정될 예정

⑥ 전략물자 및 기술 관련 재재조치 강화

- 對이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공급, 판매, 운송 금지조치 확대

- 제재 대상에 대한 예외 적용사례가 축소되었으며, 전략물자와 기술에 대한 제재의 정확한 범위는 추후 세부 시행규정에서 명시될 예정

7 이란 화폐 및 동전에 대한 제재

- 신규로 인쇄, 주조되거나 미발행된 이란 은행권과 동전에 대한 이란 중앙은행으로의 또는 이란중앙은행을 위한 배송 금지

III. 제재조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

- EU는 이사회 결정 2012/35/CFSP에 규정된 새로운 제재조치 시행을 위해 세부 시행규정을 개정하였으며 EU 관할권내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직접 적용되도록 하였음.
 - 이사회 시행규정 54/2012는 위의 이사회 결정(2012/35/CFSP)으로 도입된 내용을 반영하여 EU의 자산동결 리스트(이사회 규정 961/2010의 Annex VIII)를 개정
 - 이사회 시행규정 56/2012는 세부내용의 추가없이 이란 중앙은행과 Tejarat 은행에 대한 내용을 수정
- 이러한 규정들은 이번 제재조치 관련 이사회 결정의 일부분만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관련 시행규정들이 조만간 채택될 예정임.
 - 현재 정확한 석유화학제품명이나 관련 장비 및 기술지원의 범위 등과 같이 새로운 제재의 세부사항들을 정의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.

[파리사무소]